

## 터키신문평의회

### I. 터키 언론현황

터키는 국토의 3%가 유럽대륙에 위치하며, 그 나머지는 아시아대륙에 속해 있는 유럽·아시아 국가로, 대부분의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국가에 비해 더 유럽 화되어 있다. 터키는 터키인 85%, 쿠르드인 12%, 기타 몇몇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85%가 터키어를, 13%~17%는 루르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어는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터키는 1928년 알파벳을 아랍식에서 라틴 식으로 바꾸는 언어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문학해독률은 70%에 이른다.

터키에는 1924년에 설립된 준국가기관인 아나톨루통신사가 있다 이 통신사는 해외에 특파원을 파견하지 않고, 단지 외국통신사와 제휴하여 국내외에 배포되는 회보, 팜플렛, 서적 등에 뉴스를 공급한다. 이에 비해 1950년에 설립된 투르크 하베르레르통신사는 터키 국내뿐만 아니라 영 중 미국 등 주요 국가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외에 후리엔트지는 이스탄불에 자신의 통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아카잔스, ANKA, EBA 등의 상업통신사가 있다.

터키는 1964년 라디오·TV법에 따라 공공기업인 터키방송협회(TRT)가 설립되어 3개의 라디오 및 1개의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방송은 1927년에 민영방송으로 시작했으나 1936년 국유화되었다. 1968년에 시작된 TV 방송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한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457개의 일간지, 519개의 비일간지, 1,257개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일간지의 발행부수는 총 457만부로, 신문보급률은 1천명당 40부이다 터키 신문은 주로 조간으로, 주 7회 발행되며, 후리엣트, 구냐이딘, 사클람박, 테르쿠만, 밀리엣트 등 5대 일간지가 총 발행부수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상위 3개 신문인 후리엣트, 구냐이딘, 사클람박 등은 사미비가의소유로 황색신문의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1924년에 창간된 콤후리엣트지는 부수는 적지만중도 좌파노선을 추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장 진지한 보도태도를 견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

터키는 신문의 발행과 배포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매정, 기술의 측면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은 없다. 1961년에 공포된 1960년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22 조는 국가안보와 국민윤리의 보호, 개인권리의 보호, 범죄행위의 선동방지 등을 위해 언론자유와 정보취득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신문의 일시적인 정간이나 언론인 구속, 폐간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정기간행물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만 폐간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는 극단적인 정기간행물은 자주 폐간되곤 했다. 그러나 1980년 혁명 이후에 국가안전위원회는 헌법 전체를 일시 폐지했었지만 후에 원상복귀하였다.

### II. 신문평의회 설립 및 구성

현행 신문평의회 이전의 터키에는 1960년 7월에 설립된 신문명예재판소가 있었다. 이 신문명예재판소는 1960년 학생운동으로 독재정권이 물러난 후, 모처럼 얻어진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명예재판소는 언론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신문평의회는 1988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신문평의회 운영규칙과 불만호소심의절구」 규정에 의거 그 활동이 강화되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평의회 회원단, 대표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신문평의회 회원단은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약한 ①기자증을 소지한 언론인, ②언론기관의 소유주 및 대표자, ③언론관계유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신문평의회 대표위원회는 언론인 회원과 비언론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인회원은 ①신문평의회 발기인 회원, ②1일 판매부수가 5만부 이상인 언론사의 소유주 및 대표자, ③각 신문사 총 발행부수가 50만부 이상의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 소유주나 대표, 방송협회장, 언론기관 연합체의 장 또는 대표, ④신문평의회 회원단 회원 중 비밀투표로 선출된 기자신문증 소지자 45인 등이며, 비언론인회원은 ①언론·출판고등전문학교장, ②가입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동자조합연맹의 총 대표자, ③가입원이 가장 많은 고용주연합연맹의 총 대표자, ④터키변호인연합회장, ⑤기타 법조계, 문화계, 스포츠계 등의 분야에서 선출한 최하 6~15인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최고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문제를 검토하며, 그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다. 한편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대표위원 중에서 선출된 언론인 6인, 비언론인 3인 등 9인, 1일 판매부수가 5만부 이상의 신문사 소유주, 판매부수가 5만부 이상의 5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 소유주 10년 이상 언론인 경력자 등으로부터 각각 선임된 3인, 터키방송협회장 또는 그가 임명한 대표, 가입 기자가 가장 많은 신문협회장, 신문인노동조합장, 언론기관 경영자연합회 장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불만호소를 처리한다.

신문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최고위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신문평의회를 대표하며, 유고시 부의장이, 부의장 유고시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사무총장은 10년 이상 언론인 경력자 중 고정된 직업인으로 최고위원이 아닌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원할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의장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회원들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III. 신문평의회 심의절차

불만호소인이 언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사항의 검토, 심의 및 결정은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한다. 최고위원회는 단지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약한 언론인 및 언론기관 그리고 그 소속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불만호소에 대해 언론윤리강령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불만호소인은 문제의 기사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독자들이 쉽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계속중인 문제, 공중의 관심사항에 관한 문제, 보도 후 2개월이 경과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불만호소는 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불만호소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하며, 평의회가 정한 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불만호소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그 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최고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소집된다. 최고위원회나 사무총장은 신청사건을 검토하여 불만호소인이 신문평의회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기각시킬 수 있다. 신청된 불만호소건에 대해, 사무총장은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불만호소에 관한 모든 서류와 그 자신의 견해 등을 밝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최고위원회 위원 중 자신이 불만호소의 대상이 되었거나,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불만호소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또는 업무상 자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신문사가 그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관련 언론인이나 해당 언론기관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고 3인까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관련 언론인이나 해당 언론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들도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심의과정에서 불만호소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며, 위원의 질문에 답한다. 또 최고위원회는 불만호소를 검토하거나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벌금형의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불만호소가 될 만한 이유가 없음」, 「각성」,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불만호소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불만호소인은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과정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그 결정은 손해배상요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근거로 직책에서 해임시킬 수 없다.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을 경우, 대표위원 1인을 언론기관에, 또 다른 1인은 언론유관단체에 파견하여 그 결정을 통고한다. 언론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 IV. 신문평의회 정관

##### (목적)

**제 1 조** 신문평의회는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초석이 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론을 자주적이며 책임성 있는 언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언론인과 언론종사자들이 자주적이며 명예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규정에 찬성하는 언론인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 (기 관)

### 제 2 조 언론평의회의 기관들.

1. 신문평의회 회원단
2. 신문평의회 대표위원회
3.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기타 신문평의회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 (신문평의회 회원단)

제 3 조 신문평의회 회원단은 이 평의회의 설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약한;

1. 기자 신분증을 소지한 언론인들,
2.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기관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들,
3. 터키방송협회 회장,
4. 신문, 출판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조합장들 및 고용주 연합회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직, 연맹, 연합장들로 구성된다.

제 4 조 신문평의회 회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인,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의 언론기관은 신문평의회의 어떠한 기관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임무도 맡을 수 없다.

제 5 조 신문평의회 회원만의 회원자격;

1. 개인이나 언론기관 또는 언론유관기관의 연합단체들은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명한 그 순간부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언론인과 비언론인 등 모든 발기인들은 당연히 신문평의회의 회원이 된다.

## (신문평의회 대표위원회)

제 6 조 신문평의회 대표위원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 된다.

1. 언론인회원들
  - 1)신문평의회 「발기인」인 회원(처음 구성된 대표인 위원회에서).
  - 2)1 일 순수 평균 판매량이 5 만부 정도인 신문, 잡지의 소유주나 대표, 또는 계열사들의 1 일 순수평균 판매량의 합계가 최하 50 만부인 신문 또는 잡지 등에 직접 작성한 기사나 사진을 계속 기고하는 통신사의 소유주나 대표, 터키방송협회 회장 또는 그 대표, 언론기관연합의 장 또는 대표.
  - 3) 언론평의회 회원단 회원 중 비밀투표로 선출된 기자 신분증 소지자 45 인
2. 비언론인회원
  - 1)언론, 출판고등전문학교장들
  - 2)가입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노동자조합연맹의 총 대표자.
  - 3)가입 소속원수가 가장 많은 고용주연합연맹의 총 대표자
  - 4)터키 변호인 연합회장.
  - 5)위에 열거된 이들 외에 법조계, 문화계, 스포츠계 등의 분야에서 선출된 최하 6~15 인의인사 등

**제 7 조** 최초로 대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1/3 은 첫해말, 다른 1/3 은 두번째 연도말에 새로 선출된다. 어떤 위원이 해임될 것인지는 임기가 완료된 때, 대표위원회의 회의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 8 조** 선거로 뽑힌 위원들의 임기는 3 년이다. 선거는 비밀투표와 다수득표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임은 가능하다. 임기만료 전에 공석이 된 위원직은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선된다.

**제 9 조** 그의 지위를 근거로 하여 대표위원회의위원이 된 사람의 직위는 그가 소속된 신문에 의한다(기간단체 및 국회에서 추천된 위원이 그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떠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퇴임한 것으로 본다). 언론기관연합 의장들이 계속적으로 위원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속된 단체의 이사회가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대표위원회의 임무)

**제 10 조** 대표위원회는 대표위원회 소속위원 중 언론인 6 인과, 비언론인 3 인을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며, 선거로 뽑힌 언론인 회원 중 최소한 1 인은 일간지가 아닌 정기간행물을 대표한다.

**제 11 조** 대표위원회는 신문평의회 의장의 참관 하에 연 1 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의장의 출장 및 기타사정으로 인한 부재시는 개최불가). 이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신문평의회의 업무보고를 한다. 동위원회는 또한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다. 대표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언론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 관해 논의를 할 수 없다. 대표위원회는 소속원 중 그 임기가 만료된 이들의 위원직에 새로운 위원들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제 12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대표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언론인 6 인, 비언론인 3 인을 포함한 9 인,
2. 1 일 평균 순수판매량이 5 만부 이상인 언론기관 소유주, 이 정도 판매량의 최하 5 개 언론기관에 스스로 작성한 기사나 사진을 계속 공급하는 통신사 소유주(또는 그들이 지명한 사람들), 그리고 최하 10 년 이상 신문기자의 경력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임된 각각 1 인의 대표(최고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는 권한은, 한 회사에 포함된 계열 언론기관들 중에서 한 기관만에 한한다.),
3. 터키방송협회 회장 또는 그가 임명한 대표,
4.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약한 언론기관들 중 가장 많은 기자회견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인협회 회장과, 신문인노동조합장과 언론기관 경영자연합장들로 각각 1 인씩 구성(또는 이들 조직의 이사회에서 보내는 각 1 인).

**제 13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신문평의회를 대표한다.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 부의장 또한 유고시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4 조** 최고위원회는 언론인들 중 1 인의 명예의장을 신출할 수 있다. 명예의장의 임기는 3 년이다.

**제 15 조** 선거로 뽑힌 신문평의회 대표위원회 위원과 최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최고위원회는, 그 임기 만료 전 사임한 위원은 대표위원회의 첫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임무수행을 위해 대표위원회 소속원들 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업무)

**제 16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2.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총회를 소집한다.
3. 보도와 관련, 언론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4. 언론과 관련된 연구작업을 한다.

**제 17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단지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명한 언론인들 및 언론기관 그리고 그 언론기관 소속원들의 직무수행에 한한다. 불만호소는 늦어도 두 달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불만호소인은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18 조** 불만호소인은 언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최고위원회가 처리해 주길 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불만호소에 대해 언론기관 또는 신문기자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대방의 서면상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불만호소를 검토한다. 불만호소 신청시 불만호소인은 비용을 납입 하고, 불만호소한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및 소송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서명서에서 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무총장은, 경제적 여유가 허락치 않는 불만호소인의 소송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액수는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 19 조** 문제된 기사에서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 신분을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기사에 대한 불만호소도 심의대상이 된다.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공중의 관심사항이나 보도 후 두 달이 경과한 불만호소는 다루지 않는다.

**제 20 조** 불만호소 신청서를 검토 및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는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 21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 된다. 그 결정은 만장일치로만 통과될 수 있다. 각 위원은 한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단지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랑의 개인적 신념을반영하는 것이다. 기권표는 무효로 한다.

**제 22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심의과정 및투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공개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공표가 없는한-비밀이다. 최고위원회는 꼭 필요한 경우 관련인의 증언을 듣고, 증인을 소환 할 수도 있다.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회는 양자를 화해 (이견조정)시키는 방법으로 불만호소를 해결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양자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합의 조정된 문제를 언론에 공표한다.

**제 23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언론관계인들 및 언론기관들에 대해 「불만호소가 될만한 이유가 없음」, 「각성」,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언론관계인 또는 언론기관들이 직업 외적인 사람들과 불만호소에 관련되었을 때의 결정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24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대표위원회 위원 1 인은 보도를 위해 언론기관에, 동위원회의 또 다른 위원 1 인은 언론유관단체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파견된다. 언론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다.

### <기타 규정들>

**제 25 조**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약한 잡지, 신문 등의 언론기관들은 「이(신문, 통신사, 잡지 등)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언론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라는 글귀를 매 호마다, 쉽게 눈에 띄는 곳에 게재한다.

**제 26 조** 신문평의회는 언론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매년 최소한 한 편의 학문연구를 하도록 한다.

**제 27 조** 신문평의회 임원들의 지위, 역할, 보수와 최고위원회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사무총장의 제안을 받아 의장이 확정한다. 의장은 의원들의 해촉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8 조** 사무총장은 고정된 직업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0년 이상 신문인으로서의 경력자로서 최고 위원이 아닌 자중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가 인준한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의장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행정사항은 사무총장이 행사한다. 의장이나 사무총장은 회원들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중 최하 10인의 동의에 의해 제기되어질 수 있다. 언론윤리강령 및 신문평의회 정관은 대표위원회정회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 (유보조항)

제 1 조 대표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 제 6 조 1 항 3 호와 2 항 3 호의 규정에 따른 대표위원은 신문평의회 발기인들이 선출한다. 제 2 조 터키방송협회가 신문평의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제 3 조의 조건을 인정하는 것이다. 터키 방송협회에 관한 법 제 2954 는 그 적용이 한정적이다.

## V. 신문평의회 운영규칙과 불만호소심의 절차

**제 1 조**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초석이 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론인을 자주적이며 책임성 있는 언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또 언론인과 언론종사자들이 자주적이며 명예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또 언론인 및 언론기관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신문평의회는 다음규정에 근거하여 기능한다. 제 2 조 신문평의회 최고의결기관은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이다.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1.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고, 수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그 노력의 결과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총회를 소집한다.
3.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4. 언론과 관련된 연구를 하도록 하게끔 할 책임이 있다.

### (언론의 자유)

**제 3 조** 신문평의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인 언론자유를 실현하고, 그를 영구히 보장하며, 또한 그 실현과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신문평의회 정관에 서명한 언론인들은 현행 자유주의적 민주제도에 적합한 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의 불변조항으로 삽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의 자유가 바로 대중의 진실을 알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저해하고자 하는 모든 공개적, 비공개적 제한조치들에 대항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높이는데 필요한 것이라 본다. 그러한 이유로;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실현하는 것이 신문평의회 주요 임무임을 인식한다. 신문기자가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가 얻은 정보의 출처를 비밀에 부칠 권리, 또 이와 관련하여 청문회 또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역할을 회피할 권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신문평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이다. 신문평의회는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권리를 저해하고 또 사실을 자유롭게 평론할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간섭을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제 4 조**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신문평의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각종 활동을 한다

**제 5 조**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위한 신문평의회 기본목표 중 하나이다.

**제 6 조** 신문평의회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자체심의하며, 업무수행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언론윤리강령」의 16개항과 관련된 「타당성있는 불만호소」에 대해 심의한다. 그 언론의 윤리강령 16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교 등을 이유로 질책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질 수 없다.
2.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보편적 윤리의식이나, 종교적 감정, 또는 한 가정의 기초토대를 동요시키거나, 상하게 하는 보도는 행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인 언론은 윤리에 어긋나는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4. 비평의 한계를 지나쳐 개인이나 단체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든가, 무시하는 등 비방의 성격을 띤 기사는 보도할 수 없다.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진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또는 옳다는 확신이 없이 보도할 수 없다
7. 비밀을 전제로 하여 입수한 정보들은 진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보도할 수 없다
8. 한 언론기관의 배포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 언론기관의 자체 노력으로 얻은 기사는 다른 언론기관에 의해 자신들이 취재한 것인 양 보도되어질 수 없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특별보도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한다.
9.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범죄인」으로 보도될 수 없다.
10. 법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행동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법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호도할 수 없다.
11. 기자는 기사출처의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그 출처가 언론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2. 기자는 직업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방법이나 태도로 취재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13. 극렬과 폭력에 호응하는 보도는 삼가해야한다.
14. 광고나 선전의 성격을 띤 기사들은 광고, 선전 그 자체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15. 보도시 정해 놓은 시간제한을 존중해야 한다.
16. 언론기관들은 잘못된 보도와 관련하여 해장하거나 부인할 권리를 존중한다.

#### (언론윤리강령과 관련된 불안호소)

**제 7 조** 신문평의회는 벌금형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또 신문평의회는 결정은 배상요구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결정으로 인해 직책에서 해임될 수 없다.

**제 8 조** 신문평의회에 신청된 불만호소와 관련되어 평의회에 접수된 서류 및 정보들은 평의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떤 곳에도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단지 「언론윤리강령과 신문평의회 정관」에 참가한 언론인들 및 언론기관 그리고 그 언론기관 소속원들의 직무수행과, 이 범위에 포함되는 언론인과 언론기관들의 불만호소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제 10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불만호소를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 포함하고 있는 언론윤리강령 16개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심의한다.

**제 11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해결해주기를 원할 경우, 문제된 기사의 관련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한다. 언론기관 또는 신문기자가 자신이 부당한 책임추궁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의 서면상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불만을 정토히다(관련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거부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는, 평의회가 그 문제를 검토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당사자가 불만호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입하고, 그가 제기한 불만호소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및 소송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서명서에 서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무총장은 경제적 여유가 허락치 않는 불만호소인의 소송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액수는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 12 조** 기사에서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독자들이 그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한 불만호소도 심의대상이 된다.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여론재판에 관한 문제, 법원에 계속 중인 문제, 또는 기사화된 지 두 달이 경과한 문제들에 대한 불만호소는 심의하지 않는다.

**제 13 조** 불만호소와 관련하여, 신문평의회 사무총장의 기본임무는 불만이 제기된-문제를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의도로 행한 접촉을 적절한 기간내에 마무리 짓는다. 양자간에서 중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건, 모색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사무총장은 사건에 관련된 서류와 자신의 접촉결과, 또는 모든 증거물과 함께 자신의 조언을 첨부한 보고서를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14 조**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언론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 언론인은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경청되어지거나, 자신의 증거들도 검토되어지기를 원할 수 있다. 양자 중 한쪽이 언론기관에 설명할 기회를 가졌을 때 다른 한쪽에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15 조** 불만호소의 문제를 정토한 담당자는 불만호소인이 신문평의회의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할 경우, 그 불만호소를 기각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여기서 담당자는 사무총장 또는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이다).

**제 16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진다. 모든 위원은 한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개인적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권표는 무효이다.

**제 17 조** 신문평의회에 불만호소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의 장님, ....신문 (잡지,통신)사가....일자에....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여, 언론윤리강령 중 제....또는 제....조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신문평의회에 의해 정토되어져 결정되기를 바라며, 신문평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문제에 있어 재판의 방법이나 관련 당국을 통해 다시 불만호소하지 않을 것(고발, 고소, 소송제기 등)임과, 이 문제에 관해 단지 신문평 의 회 가 「이 것은 우리 가 다른 문제 가 아니 다.」 라는 결정을 통보한 후에야 답변의 권리를 사용할 것을 다짐 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의 격식을 갖춘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불만호소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8 조** 신문평의회에 불만호소를 제기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평의회의 결정이 보도되어지지 않기를 원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대한 승락여부는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9 조**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은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의 첫 청문회 개시전에 그 의원 중 최고 3인까지 서면으로 기피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에 대한이유서가 없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그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은 스스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 해당 위원들이 없는곳에서 그 신청을 승락할 것이가를 결정한다. 그 결정은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신청된 위원 스스로가 심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최고위원회가 그 신청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정수는 기피신청된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수이다.

**제 20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위원들 중 자신이 불만호소대상이 되었거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위원은 불만호소가 심의되는 회의나 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회원수는 19 조의 마지막 사항에 따라 계산된다.

**제 21 조** 신문평의회에 불만호소한 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서면으로 명백하게 설명하고, 갓출 수 있는 필요한 서류들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22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사무총장에 의해 상정된 보고서가 신문평의회 정관에 따라 심의되어 질만 한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그 보고서에 관한 심의는 열릴 수 없다.

**제 23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최대 두번의 심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된 서류에 관해 심의한다(관련 당사자의 견해, 필요한 서류수집, 증인의 견해등

**제 24 조**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대상이 된 서류에 관해서는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과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 이미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 25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은 업무상 자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과 기사에 관한 문제의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업무관계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것인지, 막연한 상황에서는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 심의대상이 된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과 친척관계 또는 가까운 친구관계에 있는 위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최고 위원회에 밝히고, 신문평의회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평의회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정회원수는, 제 19 조 마지막 사항에 따라 계산된다.

**제 26 조**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회는 양쪽을 오해시키는 방향으로 불만호소건을 종결시킬 수있다. 최고위원회는 또한 양측의 동의를 얻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화해 조정된 문제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제 27 조** 신문평의회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만호소 신청과 관계된 모든 요청들을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함께 보고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한다 또한 심의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고 판결문을 기록한다.

**제 28 조** 최고위원회는 언론관계인들 및 언론기관들에 대해 「불만호소가 될만한 이유가 없음」, 「각성」,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언론관계인 또는 언론기관들이 직업외적인 사람들과 불만호소에 관련되었을 때의 결정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론평의회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서와 함께 설명되어진다.

**제 29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대표위원회 위원 1 인은 보도를 위해 언론기관에 또 다른 위원 1 인은 다른 언론단체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파견된다. 불만호소와 관련된 결정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기관은, 다른 공표문으로써 여론에 알려지게 된다.

**제 30 조**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는 불만호소를 검토하거나,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견해와 지식, 경험을 얻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신문평의회 최고위원회 고유의 최후 결정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 31 조 이 규칙은 1988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